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경고·시정·통보

제 목 ○○○○ 청사 유지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 1. 업무 개요

○○○○(○○○○○○)에서는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전문소방관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맞춤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첨단 훈련시설과 교수요원, 교육생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물관리법」 제3조·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 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청사 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제3조의2에 따르면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하였고, 소방본부에서는 매년 소방본부·소방 직속기관 사무전결처리지침을 정비하여 시행<sup>1)</sup>하고 있다.

또한 소방 직속기관 사무전결처리지침 중 ○○○○의 고유사무에 따르면, 청사 신·증축 대수선 등 계획업무는 ○○○○장 결재로 하고, 청사 유지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는 ○○○○○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 ○○○○○ 자체점검 미실시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sup>2)</sup>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사 유지 관리에 힘썼어야 했고,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했다.

또한 ○○○○의 주요시설 총 ○○동에 대한 소방 청사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1) 최근 전결규정 시행 소방행정과-3309(2024.2.14.) 「2024년 소방본부 사무전결처리지침 정비결과 알림」 호

2)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수립하여 공공기관 청사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시설의 수명 연장  
과 예산 절감, 그리고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 ○○○○○이 건축물 사용승인되었을 때 60일 이내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각 장비의 기능 상태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사항을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어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 청사 유지·관리 소홀

○○○○(○○○○○○)에서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  
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사 유지 관리에 힘써야 했으나 ☆☆☆☆☆는 불  
라인드가 노후되었고, 벽이나 장판 쪽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용화장  
실에는 변기 막힘으로 사용불가능한 화장실이 있고, 공용샤워실의 천장 배기구 및  
사물함이 노후된 채로 소홀히 관리하였다.

그리고 ♥♥♥♥♥은 생활관 벽에 곰팡이가 심하고 장판이 울거나 뜯어진 곳  
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생활관 내부통로 바닥과 벽이 훼손된 채로 관리하였다.

또한 ♣♣♣ ♣♣♣는 바닥이 다 훼손되어 있고,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  
여 계단실 아래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었으며, ◇◇◇◇◇◇◇ 철골은 부식이 심  
하여 전체적으로 페인트 벗겨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였  
는데 ◇◇◇◇◇◇◇ 유지보수(00,000천 원) 공사 금액만 신청하고 ☆☆☆☆☆,  
♥♥♥♥♥, ♣♣♣ ♣♣♣ 등의 노후 보수공사는 신청하지 않았다.

#### 나. 소방청사 유지 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매년 ○○○○의 주요시설 ○○○○동에 대한 소방청사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청사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절감, 그리고 안전확보를 하여야 했지만 매년 실시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고 청사 유지 관리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 다. ○○○○ ○○○○○ 자체점검 미실시

○○○○(○○○○○○)에서는 ○○○○ ○○○○○ 건물 사용승인일(2024. 9. 20.)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사항을 ◇◇◇◇◇에 제출하지 않아 ◇◇◇◇◇로부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에 따른 위반사항을 통보받았다.

####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는 2019. 1. 2.부터 2022. 1. 9.까지, 소방♡ ♡♡♡은 2022. 1. 10.부터 2023. 7. 2.까지, 소방☼ ☼☼☼는 2023. 7. 3.부터 2024. 6. 30.까지, 소방◇ ◇◇◇은 2024.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은 2020. 7. 2.부터 2021. 7. 4.까지,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4. 7. 3.까지, 소방◇ ◇◇◇은 2024. 7.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영은 2021. 1. 2.부터 2021. 7. 4.까지,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4. 7. 3.까지, 소방♡ ♡♡♡은 2024. 7. 4.부터 2025. 1. 5.까지, 소방♣ ♣♣♣은 2025. 1. 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사 관리 담당자로 ○○○○ 청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소방◇ ◇◇◇는 2024. 1. 3.부터 2025. 1. 5.까지 소방시설(전기·기계)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 힘써야 했으나 ☆☆☆☆☆, ♡♡♡♡♡, ♣♣♣ ♣♣ 등이 노후되어 있음에도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당초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공기관 청사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등을 위해 ○○○○ 주요시설 총 ○○동에 대한 소방 청사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청사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감사 대상 기간동안 매년 실시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고 청사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 ○○○○○의 소방시설 완공은 2024. 4. 11.이었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24. 9. 20.로 둘 사이의 기간이 5개월정도 소요되었고 해당 기간 중 2024. 7. 4.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무분장이 변경되어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최초점검 실시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최초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2025. 3. 28.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통하여 최초점검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건축물관리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 전결처리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부지면적 000,000㎡, 총 ○○개 동을 ○○○○○장과 청사주입, 공무원 2명 등 소수의 인원으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점, 道 재정여건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을 할 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신청하였던 점, 인사이동으로 실무자 및 팀장이 자주 교체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기관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6. 조치할 사항

가. ○○○○○○○○○○○○○○은

- ① [기관경고] ○○○○ 청사 유지·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를 「기관경고」 처분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고,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시정] ○○○○ 청사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 청사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하시고, 아울러 ○○○○ 청사 유지·관리는 청사관리부서 한 팀의 문제가 아닌 ○○○○ 전 소속직원이 같이 힘써야한다는 것을 소속직원들에게 알려주시고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장(○○○○○○○○)은

- ① [통보] ○○○○에서 ☆☆☆☆☆, ♥♥♥♥♥, ♣♣♣♣♣♣ 예산신청 시 예산 반영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